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367
----------	------

2021. 04. 2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종무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용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724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21년 1월 26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1.4.27.)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 전통적인 장례 문화가 매장 중심에서 화장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봉안시설의 신설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종교집회장의 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유골수 규모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

여 봉안당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제한적으로 관내 봉안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공기여 할 경우, 공공기여 비용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토지가치로 정하고, 공공기여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도록 함(안 제19조의6).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종교집회장의 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골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제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토지가치를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70퍼센트를 말한다.

제27조제4호 중 “(유골 750구 이하에 한한다)”를 “(유골 750구 이하에 한한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다).

5.~10. (생략)

한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다).

5.~10. (현행과 같음)